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24
----------	--------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관련 규칙 폐지,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 정비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

나.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의무조항 내용 변경

- 1)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 조항 삭제
- 2)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 계획 수립·시행

다.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용어 변경)

: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임명

라. 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

: 상위법령(구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정보화전략위원회 존립 근거 및 심의·조정 역할이 삭제됨에 따라 위원회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

마.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른 정비

1)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및 재정비

2) 지능정보화 추진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된 용어·표현 전반적으로 정비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폐지

: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규칙 폐지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10. 6. ~ 10. 26.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법무팀 의견]

관 계 법 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무팀 검토의견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2.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의 보호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4.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보건, 주민생활, 산업, 안전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 연계·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수강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

생으로부터 별표의 수강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과정 진행 중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납입 수
강료 중 전체 수강일수에 비례한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거나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여 우선적으로 수강하
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교육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과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13조(지능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주
민의 지능정보화 교육 참여 활성화 및 지능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
기 위해 지능정보화 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능정보화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에 대하여 구청장은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제14조(홈페이지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인터넷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2. 구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등
- ③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민과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홈페이지 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명 및 담당직원 등을 명시하여 책임있는 관리 및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구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누구인지 짐작하게 하는 내용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비난하거나, 따르지 말 것을 선동하는 게시물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게시물
9.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화교육의 수강료(제12조제1항 관련)

교육시간	수강료
10시간~20시간	20,000원 이하
21시간~30시간	30,000원 이하
31시간~50시간	40,000원 이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 정
비이므로,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 사유 없음

4. 작성자 : 재정관리국 디지털재정과 임연숙 (☎ 3153-8415)